

# 투자권유준칙 개정대비표

시행일자 : 2026.03.04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4조(설명의무)</p> <p>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p> <p>2.~5. 내용 생략</p> <p>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p> <p>가.~다. 내용 생략</p> <p>7.~8. 내용 생략</p> <p>9.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p> <p>10.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p>	<p>제14조(설명의무)</p> <p>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u>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u>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p> <p>2.~5. 내용 생략</p> <p>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u>설명에 필요한</u>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p> <p>가.~다. 내용 생략</p> <p>7.~8. 내용 생략</p> <p>9.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u>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u>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10.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p>	<p>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사항 반영</p>

<p>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11. (신설)</p>	<p><u>11. 회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상품구조의 정확한 이해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숙려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청구에서 투자권유시 활용할 수 있다.</u></p>	
<p>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p> <p>1.~3. 내용 생략</p> <p>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p> <p>1.~3. 내용 생략</p> <p>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u>6영업일</u>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6영업일</u>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사항 반영</p>
<p>(제 25조 신설)</p>	<p><u>제25조(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u></p> <p><u>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1호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u>가.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u></p> <p><u>나. 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u></p> <p><u>다.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u></p> <p><u>라. 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u></p> <p><u>2. 임직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u></p>	<p>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사항 반영</p>

	<p><u>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u>가.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u></p> <p><u>나.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u></p> <p><u>다.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u></p> <p><u>라.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u></p> <p><u>3. 임직원 등은 과거에 투자권유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부칙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9)</u></p> <p><u>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u></p>	부칙 신설